

의안  
번호

924

[울산광역시중구 마을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]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·제출자 : 2012. 08. 29(수)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2. 08. 29(수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2. 09. 07(금)

## 2. 제안사유

「울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」(2011. 11. 7.) 및 「작은도서관 진흥법」(2012. 2. 17.)이 공포됨에 따라,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사항들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기여하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를 향상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### ○ 조례 제명 변경

- 울산광역시중구 마을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
⇒ 울산광역시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

### ○ 도서관 용어 변경(안제2조)

- 마을도서관 ⇒ 작은도서관
- 2009. 9. 26. 「도서관법」 개정시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에 미달되는 도서관을 문고에서 작은도서관으로 변경 정의하고 있으며, 우리 구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을도서관도 현행 도서관법의 작은도서관과 유사 개념이므로 도서관법상 용어인 작은도서관으로 변경

### ○ 설비 요건 변경(안제4조)

-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의 작은도서관 기준으로 변경
- 열람석(15석 ⇒ 6석), 건물면적(67㎡ ⇒ 33㎡)
- 동주민센터도서관을 작은도서관의 범주에 포함
  
- **도서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(안제5조)**
  - 구청장은 생활환경 가까운 거리에 도서관 조성에 노력
  - 도서관의 원활한 기능 유지를 위한 예산 지원
  
- **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(안제6조 ~ 제10조)**
  -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이내로 구성
  - 위원장의 직무, 위원회의 기능, 위촉, 해촉, 임기, 회의 등에 관한 사항
  
- **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(안제11조)**
  - 도서관 운영, 독서 강좌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사항
  - 자원봉사자 및 강사에 대한 실비보상
  -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
  
- **도서관 지도감독,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(안제12조~제14조)**
  - 연1회이상 도서관 운영 및 관리사항 지도 점검
  - 도서관 기증자료 및 자료의 교환·이관에 관한 사항

#### 4. 근거법규

-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
- 울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(2011. 11. 7. 공포)
- 작은도서관 진흥법(2012. 2. 17. 공포)

#### 5. 참고사항

- 가. 예산 조치사항 : 2012. 7. 18.(예산주무관 협조)

나. 규제사무 심의 : 해당없음

다. 관련부처 승인 : 해당없음

라. 입법예고 사항 : 2012. 7. 23. ~ 8. 13.(의견없음)

## 6. 검토의견

□ 본 조례개정안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12.8.18일부터 제정 시행됨에 따라,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사항들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육성발전에 기여하고,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를 향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,

### □ 주요 개정내용은

- ▶ 조례제명을 관련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마을도서관을 작은도서관으로 자구를 수정하고
- ▶ 작은도서관 설비요건을 열람석은 15석에서 6석으로, 건물면적은 67제곱미터에서 33제곱미터로 완화하며(안제4조)
- ▶ 도서관운영에 관한사항과 지도감독, 자료관리에 관한사항을 신설하여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